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살롱 드 오페라)

심사보고서

2021. 11. 29.

의안 번호	533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11.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강남문화재단

○ 출연내용 : 강남문화재단 조직 및 자체사업(기존사업) 운영

○ 출 연 금 : 금5,729,872,000원(금오십칠억이천구백팔십칠만이천원)

- 조직운영 출연금 : 금1,756,175,000원

- 사업운영 출연금 : 금3,973.670,000원

의안 531번 - 2022년도 사업별(기존사업) 출연금 내역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2 요구액	2021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계	5,729,872	5,510,797	219,075	3.9%	
문화체육과	5,729,872	5,510,797	219,075	3.9%	
재단운영	1,756,175	1,730,033	26,142	1.5%	일반직 2명 증원 연봉인상률(2.9→3.6%) 명절휴가비 신설 등
조직운영 출연금	1,756,175	1,730,033	26,142	1.5%	
사업비	3,973,697	3,780,764	192,933	5.1%	
예술단 운영	3,137,638	2,942,871	194,767	6.6%	연봉인상률, 명절휴가비, 자산취득비 증가 등
클래식품격 콘서트	238,391	191,956	46,435	24.2%	홍보물제작비 증가
목요예술무대	269,800	257,025	12,775	5.0%	
키즈예술공연	65,069	63,242	1,827	2.9%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17,979	14,350	3,629	25.3%	
Street 뮤지엄 프로젝트	77,325	108,940	△31,615	△29.0%	이월금으로 충당
아트큐브강남	12,315	17,125	△4,810	△28.1%	
재단 홍보사업	155,180	39,255	115,925	295.3%	정기간행물제작 (조직운영비→홍보사업)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사업완료)	0	113,000	△113,000	△100.0%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 (사업완료)	0	33,000	△33,000	△100.0%	

의안 532번~534번 2021년도 사업별 신규사업 출연금 내역안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안번호 532) 우리국악한마당(신규)	45,000	0	-	100%
(의안번호 533) 살롱 드 오페라(신규)	68,220	0	-	100%
(의안번호 354) 수서동 궁마을공원 퍼블릭아트 프로젝트(신규)	360,000	0	-	100%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3]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에도 해당되어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음은 2022년 강남문화재단 사업별 총괄사항임.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계	운영수입	구출연금	위탁금	기부금	이자수입	이월금
총 계	31,411,516	278,122	6,203,092	21,933,194	310,000	86,067	2,601,041
소 계	9,478,322	278,122	6,203,092	0	310,000	86,067	2,601,041
재 단 조 직 운 영	2,356,175	0	1,756,175	0	0	0	600,000
교 향 악 단 운 영	3,874,235	249,396	2,804,839	0	0	0	820,000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사 업 명		예 산 액						
		계	운영수입	구출연금	위탁금	기부금	이자수입	이월금
총 계		31,411,516	278,122	6,203,092	21,933,194	310,000	86,067	2,601,041
	소 계	9,478,322	278,122	6,203,092	0	310,000	86,067	2,601,041
자체사업	합 창 단 운 영	372,799	0	332,799	0	0	0	40,000
	클 래 식 품 격 콘 서 트	321,491	23,100	238,391	0	0	0	60,000
	목 요 예 술 무 대	372,710	2,910	269,800	0	0	0	100,000
	키 즈 예 술 공 연	87,785	2,716	65,069	0	0	0	20,000
	이야기가있는 토크콘서트	32,979	0	17,979	0	0	0	15,000
	Street뮤지엄 프로젝트	107,325	0	77,325	0	0	0	30,000
	재 단 홍 보 사 업	325,180	0	155,180	0	0	0	170,000
	아 트 큐 브 강 남 운 영	19,315	0	12,315	0	0	0	7,000
	우 리 국 악 한 마 당	45,000	0	45,000	0	0	0	0
	살 롱 드 오 페 라	68,220	0	68,220	0	0	0	0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	360,000	0	360,000	0	0	0	0
	가 상 합 창 프 로 젝 트	42,591	0	0	0	0	0	42,591
	우 리 마 을 청 년 기 획 단	21,695	0	0	0	0	0	21,695
	강남구동네방네공공미술이야기	35,000	0	0	0	0	0	35,000
	강 남 예 술 인 축 제	97,755	0	0	0	0	0	97,755
	기 부 금 사 업	552,000	0	0	0	310,000	0	242,000
	이 자 적 립 (기 본 재 산)	74,067	0	0	0	0	74,067	0
	예 비 비	312,000	0	0	0	0	12,000	300,000
위탁사업	소 계	21,933,194	0	0	21,933,194	0	0	0
	문 화 센 터 운 영	17,070,703	0	0	17,070,703	0	0	0
	세곡커뮤니티센터 운영	1,103,151	0	0	1,103,151	0	0	0
	강 남 힐 링 센 터 운 영	1,293,101	0	0	1,293,101	0	0	0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1,202,124	0	0	1,202,124	0	0	0
	세 곡 마 루 도 서 관 운 영	188,155	0	0	188,155	0	0	0
	개포라온영어도서관 운영	507,848	0	0	507,848	0	0	0
	전 자 도 서 관 운 영	39,420	0	0	39,420	0	0	0
	공 연 장 · 전 시 실 운 영	199,989	0	0	199,989	0	0	0
	푸 른 솔 도 서 관 운 영	328,703	0	0	328,703	0	0	0

○ 의안번호 531번은 기존사업으로 출연금 5,729,872천원이고 의안번호 532번부터 534번까지는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4억7천3백2십2만원으로 분리 작성하여 제출한 바 총 출연금은 62억3백9만2천원으로 편성한 것임.

○ 먼저, 의안번호 531번은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은 작년 출연금 대비 3.9% 증가한 57억2천9백8십7만2천원으로 재단운영 출연금은 1.5% 증가한 17억5천6백1천7만5천원으로 증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사업비 출연금은 작년 출연금 대비 5.1% 증가한 39억7천3백6십9만7천원으로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바이러스 해킹방지스템 구축 2개 사업은 사업완료 되었음. 사업비 출연금 중 ‘예술단 운영’, ‘클래식품격 콘서트’ 및

‘재단홍보사업’ 은 전년도에도 각각 18.8%, 72.6%, 162.1% 대폭 증편성하였는 바 내년도에도 각각 6.6%, 24.2%, 295.3%로 증편성하였는 바 특히 재단홍보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2년도 재단의 사업계획을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강남구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위탁사업과 구별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하고 있음.

2022년 재단 예산 편성(안)

구 분	지 출	수 입
2022년도 재단 예산 편성안	31,411,516천원	31,411,516천원

〈 지 출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31,411,516**	100	25,177,753	100	6,233,763	24.76
자체사업	8,540,255	27.19	6,825,988	27.11	1,714,267	25.11
대행사업	21,933,194	69.83	17,443,698	69.28	4,489,496	25.74
기부금사업	552,000	1.76	622,000	2.47	△70,000	△11.25
기본재산 이자	74,067	0.24	74,067	0.29	0	0
예비비	312,000	0.99	212,000	0.84	100,000	47.17

〈 수 입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31,411,516**	100	25,177,753	100	6,233,763	24.76
자체사업	364,189	1.16	501,258	1.99	△137,069	△27.34
대행사업	21,933,194	69.83	17,443,698	69.28	4,489,496	25.74
기부금	310,000	0.99	310,000	1.23	0	0
출연금	**6,203,092**	19.75	5,510,797	21.89	692,295	**12.56**
전년도 이월금	2,359,041	7.51	1,100,000	4.37	1,259,041	114
기부금 이월금	242,000	0.77	312,000	1.24	△70,000	△22

○ 의안번호 532번, ‘우리국악한마당’ 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연금 4천5백만원으로 주요명소에서 연간 2회 이상 공연하려는 것임. 해설이 있는 공연, 전통국악 공연, 퓨전국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악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하고, 국악인들의 공연기회 마련과 더불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추진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사업규모의 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의안번호 533번, ‘살롱 드 오페라’ 사업은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큐레이션 프로그램 6회, 연계 기획공연 2회 총 8회 공연을 위해 출연금 6천8백2십2만원으로 추진하려는 바 오페라 공연 추진배경, 주민의견, 우리 구의 품격 있는 문화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의안번호 534번, ‘수서동 궁마을공원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은 2020년, 2021년 2년간 전국 지자체 228개소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파빌리온(Pavilion)[4] 2개 설치하여 운영 중임. 국·시비 예산 4억원으로 40여명 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궁마을공원에 작가(팀)가 제안한 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궁마을공원을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구비 출연금 3억6천만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성격, 국·시비 확보 여부, 2년간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4) 파빌리온(Pavilion):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 이용되는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살롱 드 오페라). 끝.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살롱 드 오페라)

의 안 번 호	533

제출연월일 : 2021.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문화체육과

1. 제안이유

'살롱 드 오페라'와 관련된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출연기관 : 강남문화재단

○ 출연내용 : '살롱 드 오페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출연 동의

○ 출 연 금 : 금68,220,000원(금육천팔백이십이만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살롱 드 오페라' 운영 계획 (별첨)

○ 소요예산 산출내역 (별첨)

‘살롱 드 오페라’ 운영 계획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감상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고품격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월 ~ 11월 (총 8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 총사업비 : 금68,220천원

○ 장　　소 : 강남씨어터 또는 오유아트홀

○ 공연대상 : 강남구민 누구나

○ 사업내용

-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과 유쾌한 해설로 만나는 오페라 큐레이션 프로그램
- 스크린을 통해 역대 오페라 작품의 라이브 영상을 관람하고 주요 장면, 캐릭터,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어 오페라에 대한 이해와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설을 통해 접한 작품을 오페라 갈라 공연을 통해 라이브로 접하고 경험 할 수 있는 고품격 콘텐츠 제공

○ 추진계획

- 프로그램(작품) 선별 및 연간 운영(안) 기획 : 2~3월
- 홍보물 제작 및 참여인원 모집 : 3월 중
- 사업 운영 : 큐레이션 프로그램 (총 6회) / 연계 기획공연 (총 2회)
-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 12월 중

□ 추진효과

○ 구민의 수요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

□ 산출내역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8,220	0	68,220	100%
[일반운영비(200)]	68,220	0	68,220	100%
[행사홍보비(218)] ○ 홍보비 - 프로그램북 2,000,000원×1회=2,000,000원 - 포스터 및 리플렛 2,000,000원×8회=16,000,000원 - 엑스배너 200,000원×8회=1,600,000원 ○ 행사운영비 - 비품비 200,000원×8회=1,600,000원 - 공연 음향렌탈/운용 2,000,000원×2회=4,000,000원 - 공연 조명렌탈/운용 1,500,000원×2회=3,000,000원 - 공연 무대,소품렌탈/운용 1,000,000원×2회=2,000,000원 - 피아노 조율비 200,000원×2회=400,000원 - 진행운영비 500,000원×8회=4,000,000원	34,600	0	34,600	100%
[보상비(219)] ○ 출연진 사례비 - 진행자 사례비 2,000,000원×8회=16,000,000원 - 공연팀 사례비 5,000,000원×2회=10,000,000원 ○ 기타 인건비 - 진행요원 인건비 10,000원×3시간×6명×8회=1,440,000원	33,620	0	33,620	100%

편성목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무대진행 스탭비 250,000원×4명×6회=6,000,000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32,000,000원×80%×0.7%=180,000원				